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5조제1항 중 “120”을 “105”로 한다.

제4-26조제1항 본문 중 “신용공여와”를 “신용공여(신용거래대주는 제외한다)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의”를 “증권과 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는 신용거래 대주 시가상당액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용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⑦ (생략)</p> <p>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① <u>신용공여와</u>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u>증권의</u>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p>	<p>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 ----- ----- ----- ----- ----- ----- 105 ----- ----- ----- ----- -----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① <u>신용공여(신용거래 대주는 제외한다)와</u> ----- ----- ----- ----- ----- ----- ----- <u>증권과</u> <u>신용거래대주와</u>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의</p>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기업공시국
연 락 처	02-2100-2652	02-3145-8482